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2021. 1.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Contents

---

<b>01. 실무안내서 개요</b>	<b>4</b>
<b>0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b>	<b>5</b>
<b>0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b>	<b>11</b>
01 사전준비 단계	11
02 가명처리 단계	18
03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28
04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30

---

부록 (붙임)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관련 참고 양식

(양식1)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	34
(양식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서약서 양식	35
(양식3)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결정 통지 양식	36
(양식4)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거부 결정 통보 양식	37

---

# 01 실무안내서 개요

## 목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함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이며, 법령에 규정한 활용목적에 따라 **가명정보의 제공**은 기관의 **재량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활용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제공신청이 들어온 경우 기관담당자가 **단계별로 참고**

- 안내서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가이드라인**을 참조

※ 특정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있으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우선 활용

## 실무안내서 구성

### 01 실무안내서 개요

- 실무안내서 목적, 법적 근거, 활용방법

### 0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 배경, 관련규정,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절차, 주요용어 정의, 가명처리 관련 참고사항

### 0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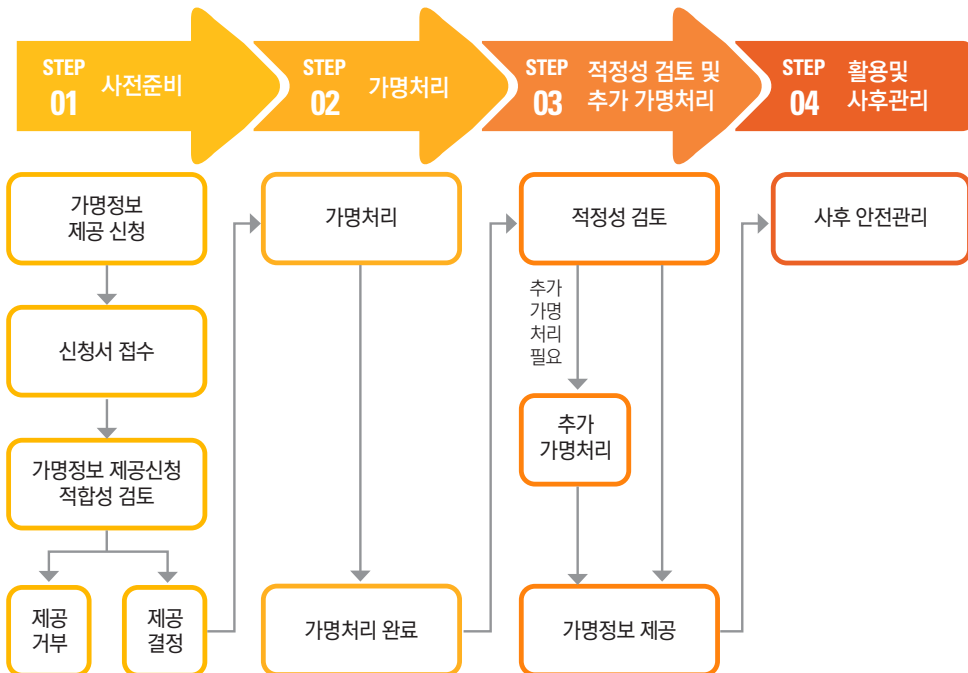
- 사전준비 단계(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검토결과 통보, 비용산정)
- 가명처리 단계(대상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처리 수준정의, 가명처리 수행)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적정성 검토, 추가처리, 제공방식 결정)
-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가명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0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3법\*이 개정·시행됨('20.8.5)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안전조치(가명처리) 후 활용이 가능**  
※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① **제공거부** 또는 ② **가명처리 후 제공**이 가능

###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절차도





##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의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주요용어 정의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임
가명처리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 ● 개인정보 예시(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 1월3일	010-9999- 3333	055-747- 0088	055-2345- 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딸1	4,567,900원	45,896, 789원

#### ● 가명정보 예시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ajeejkc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범주화	- *삭제	배우자 아들1,딸1	456만원	45,896, 789원

#### ● 익명정보 예시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범주화	- *삭제	가족 3명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추가 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매핑테이블 정보, 가명 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원본정보와 추가정보(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 가명정보는 물리적 또는 관리적·기술적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가명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가명정보취급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 등
적정성 검토	안내서에서 제시된 절차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한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재식별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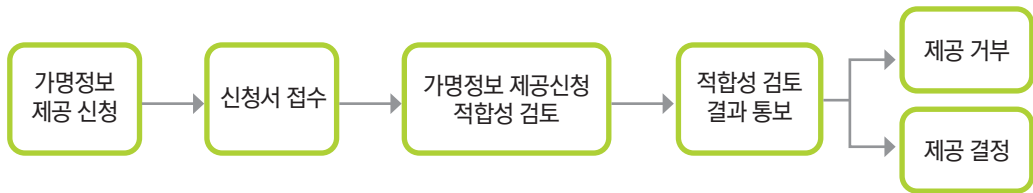
### 기타 가명처리 관련 참고사항

- 가명정보처리자는 보다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① 가명처리 신청(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② 가명처리, ③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④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⑤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⑥ 그 외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①,③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가명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분리
  - 가명처리를 수행한 자와 가명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 가명정보취급자(활용 등)는 관리적·기술적으로 권한을 분리
 \* 추가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가 가명정보의 검토를 수행하거나 취급(활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음

# 0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

## 01 사전준비 단계

공공기관이 기관보유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및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



### 1-1 신청서 접수

- 공공기관은 **신청서양식**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쉽게 찾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고)
- 신청자에게 **접수결과 및 향후일정을 안내**
  - ※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안내한 일정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기 어려우면 해당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자에게 안내

### 1-2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

- 신청이 접수되면 가명처리 대상항목 및 처리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다음의 '위원회 구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 시 참고사항'을 활용하여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구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 시 참고사항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처리 적합성 여부·위험도 측정·수준정의 등 가명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li> <li>● 별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에 검토사항 위임도 가능</li> </ul>
주요 심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 가명정보 제공목적 적합성 검토 및 최종제공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데이터 가명처리 수준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데이터 가명처리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 관련 업무 책임자급 이상이 담당</li> <li>● 위원장을 제외한 내·외부 위원은 동수로 구성</li> <li>● 위원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li> </ul>
내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부서장</li> <li>● 해당 기관의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업무 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li> <li>● 가명처리, 익명처리 기술 이해가 높은 사람</li> <li>● 해당 기관에서 법무, 리스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률관련 내부 전문가 (기관에 해당인력이 없으면 기관 임원 중 1인으로 대체 가능)</li> </ul>
외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활용 관련 전문가</li> <li>● 해당 기관에 법률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 법률전문가</li> <li>●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li> <li>● 개인정보 가명처리, 익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 전문가</li> <li>●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li> </ul>

##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으면 위원장 의견으로 결정
- 회의 상정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참여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으면 위원장 의견으로 결정
-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음
- 데이터 제공 관련 심의 시 필요에 따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
  - 위원인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위원의 배우자, 직계가족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위원이 데이터 활용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그 외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2-1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사항

- 가명정보 제공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 내부여건 및 활용 위험성, 법·제도 부합여부, 기술적 가능 여부 등을 검토

##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사항

01 기관 내부여건 및  
활용 위험성

기관의 가명처리(제공)  
비용 총당여부, 가명정보  
제공의 가치, 활용자의  
신뢰성 등 검토

## 02 법·제도 부합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2 상의 활용목적,  
기타 법적 제한 여부 검토

## 03 기술적 가능 여부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술적  
분리 가능성, 데이터 활용  
목적과 요청한 데이터의  
일치 여부 등 검토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관 여건과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사항임. 다만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해 성실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함

## ① 내부여건 및 활용위험성 등을 검토

내부여건	가명처리·제공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 총당여부, 공공기관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제공가치	제공된 가명정보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가치 및 공공성
활용자 신뢰성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악용하거나 제3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해당 가명정보 활용이 공공기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에 배치될 가능성

## ② 법·제도 부합여부를 검토

활용목적	<p>활용목적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에 해당하는지를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검토하되 기관이 주체적으로 판단*(「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p> <p>* 특히 재식별 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p>
------	---



### 활용목적 검토시 참고사항 [출처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5~6p, 12p)]

#### ●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명확화

- 법률이 허용하는 목적\* 내에서 가명처리하는 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 적절하지 않은 예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

※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음

##### ● 적절한 예시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별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능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 ● 활용목적

- 통계 작성 : 통계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 통계 작성의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기초 연구·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 과학적 연구의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 공익적 기록 보존의 예시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③ 기술적 가능 여부

개인정보 이외의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기술적 분리 가능여부를 확인

가명정보가 신청자의 요청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명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도 가명정보 활용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익명화 한 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 1-3 적합성 검토 결과 통보

### 1-3-1 제공 거부 시

- 신청자에게 거부결정 사유를 통보하고,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

※ 가명정보 제공결정은 기관 재량사항이므로 불복절차 마련 여부나 방식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제공거부 결정 통보 양식은 [붙임]을 참고)

### 1-3-2 제공 결정 시

- 신청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비용처리, 가명처리 절차·일정 등 안내

<b>필요서류</b>	가명정보 재제공·재식별 금지,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 재식별 시 파기·손해배상 등 유의사항을 포함한 서류(계약서 또는 서약서*) 작성 * 가명정보 제공 결정시 관련 필요서류 작성은 [붙임] 양식을 참고
-------------	--



### 가명정보 제공 결정 관련 필요서류 작성 시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무사항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5), 가명정보의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식별정보가 생성된 경우 처리중지 및 회수·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등의 내용을 계약서 등에 의해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처리 데이터의 제3자 재제공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가명정보의 활용 환경, 재식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재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비용 처리

각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비용기준 마련 가능



### 비용부과 시 참고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37~38p)]

- 「데이터 제공 비용 = 데이터 가공 비용 + 데이터 전송 비용」으로 산정
  - 데이터 가공 비용 : 특정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수집하거나 가공(가명 처리, 추출, 정제, 분석 등)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데이터 전송 비용 :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온라인 등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제공(가공 및 전송)비용 산정 시 참고 기준**
  - **일반 경비** :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등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직접경비  
(예 : 정보공개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등 참고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실비 측정
    -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 부문)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가능  
(예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력단가\* × 작업일수」로 제공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를 달리 적용함(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순)
 

\* 인력단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소프트웨어 인건비 기준 활용 가능
  
- **난이도** : 데이터 형태(format) 및 제공 방식 등에 따라 **차별**하여 비용 부담
  - 데이터 형태(Format)\* : 업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도면, 동영상, 지도 등에 대하여 과금
  - \* 데이터 생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차별 산정 가능  
(예 : 문서(HWP, DOC)/스프레드시트(XLS)/도면(SHX)/이미지(PNG, JPG)/동영상(AVI, MPEG)/지도(SHP) 등)

- 제공 방식\* :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오픈API 개발 및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과금

\* 단순 제공과 별도의 인터페이스(예, 오픈API)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복잡도를 고려하여 차별 산정 가능

(예 : 데이터셋(dataset) 다운로드, 오픈API, 기타)

● **권리이용 비용** :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준 등

(예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규정된 저작권 사용료 등)

※ 비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는 용역원가계산을 토대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기관은 공공데이터 처리내용 및 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 02

## 가명처리 단계

[출처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3~21p)]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로 ① 대상 선정, ② 위험도 측정, ③ 가명처리 수준정의, ④ 가명처리를 하는 4단계로 구성됨

## 가명처리 세부 절차도



## 2-1 대상선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  
※ 가명처리에 필요한 항목 추출 시 가명정보 처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해야 함



### 가명정보 처리 대상 정보 추출 예시



#### 개인정보파일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구매상품, 구매액,  
장바구니목록



#### 가명처리 목적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구매액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하고자 함  
· 가명정보 처리 대상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주소(시군구), 구매액

\* 분석 목적과 상관없는 정보는 대상선정에서 제외

## 2-2 위험도 측정

- 가명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다른정보 보유여부** 등을 검토하고,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측정**
  - 가명정보는 처리(제공) 환경에 따라 가명정보처리자 내부에서 활용(자체활용 또는 내부 제공·결합)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도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2-2-1 처리(제공)환경 검토

- 처리 목적에 따라 처리(제공)환경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다른 정보 보유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불특정 제3자(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공받는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다른정보\* 보유여부

\*제공받는 부서가 다른(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우, 제3자로부터 다른 정보를 받아 함께 활용하는 경우

## 내부 활용·제공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수탁자를 통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내부 활용에 해당하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는 내부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 동일 처리자 내 활용인 경우에도 후술하는 '4.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의 안전한 관리조치'에 따라 접근권한 분리,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수행

- 가명정보취급자의 소속 부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접근 가능한) 정보 및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제공 받는 다른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



## 내부 활용·제공 예시

**잘못된 내부활용 사례** | ○○화장품 회사의 A팀은 화장품 판매 정보를 관리하는 팀으로서, 가명정보 접근 권한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신상품 수요조사 예측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활용

**처리현황** | A팀은 판매정보 내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이름, 성별, 승인번호를 가명처리하고, 희귀 지역의 판매내역을 삭제하여 A팀 가명정보 분석담당자에게 제공

- 가명정보 분석담당자는 A팀의 판매정보 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점** | 가명정보 분석담당자는 가명정보 분석을 통해 최고가 화장품의 금액과 판매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판매정보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해당 금액과 지역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해결방안**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분석)하는 담당자가 다른 정보(위의 예시에서는 판매정보 관리)에 동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접근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잘못된 내부제공 사례** | ○○공사는 A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이용차량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관리하는 B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내부 제공

**처리현황** | A부서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차량번호, 차종 등을 가명처리하고, 이동시간, 이동량, 사고정보 등의 정보를 B부서에 제공

- B부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리를 위해 고객번호와 차량번호, 톨게이트 입출시간 및 결제금액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문제점** | B부서는 A부서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이동시간 정보와 B부서가 보유한 톨게이트 입출시간을 활용하여 특정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번호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해결방안**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처리할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보호수준이 낮은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명처리 수준을 적용하는 방법 등
  - 또한 제3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받는 다른(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 제3자의 가명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 받는 가명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
  - 사전준비 단계에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서약서에 재식별에 대해 명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제3자 제공사례 예시

**잘못된 제3자 제공 사례** | ○○호텔에서는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VIP등의 특이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호텔 투숙 및 서비스 금액 등을 ○○분석회사에 제공하고, ○○분석회사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객실이용현황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



**처리현황** | ○○분석회사는 온라인 SNS정보 및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로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음

- ○○호텔은 회원번호와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나이, 성별, 등급, 예약방법, 객실정보,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



**문제점** | ○○분석회사의 분석담당자는 특정일에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내용을 분석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기존 업무(온라인 SNS정보 수집)를 수행하며 공개된 정보(예 : 개인이 SNS에 올리는 정보, 여행후기 등)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해결방안** | ○○호텔은 제공하는 가명정보에 포함된 특이정보(최고급 객실)를 삭제 또는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2-2-2 항목별 위험도 분석

- 추출한 결과 정보의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함
  -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분류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



처리(제공)환경과 정보의 규모,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규모(레코드, 항목의 크기), 구체성(정보의 정확성 수준)



###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예시



####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료 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 식별가능정보

-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이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 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 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 2-2-3 결과보고서 작성

- 가명정보처리자는 처리(제공)환경과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참고하여 가명처리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가명처리 검토 결과보고서 예시

<b>가명정보 활용목적</b>	A사가 보유한 부동산 시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B기관에 제공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및 인근지역 시세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 수행	
<b>가명정보 항목</b>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세, 보증금, 월세 ※ 항목을 나열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사용 가능	
<b>처리(제공) 환경 검토</b>	처리 환경	특정 제3자(B기관) 제공 - A사는 B기관과 계약체결을 통해 가명정보를 제공
	제공받는 자의 환경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은 부동산 관련 다른(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제공받는 자의 보호수준	기관은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ISMS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내부관리를 통해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b>항목별 위험도 분석</b>	'소유자명', '연락처'는 식별정보, '지번'은 식별가능정보, '시세정보(전세, 보증금, 월세)'는 특이정보 가능성 존재	
<b>최종 검토의견*</b>	해당 연구는 특정 제3자와의 계약서 체결을 통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다른(개인)정보를 통해 가명정보를 재식별 할 가능성이 낮음 - '소유자명', '연락처'는 활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삭제 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가명처리 필요 - '지번' 및 '시세정보(전세, 보증금, 월세)'의 경우 다른(공개된 정보 등) 정보를 통해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삭제 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가명처리 필요 그 외의 정보들은 재식별 가능성이 낮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명처리 하지 않음	

※ 최종 검토의견은 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 및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2-3 가명처리 수준 정의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처리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활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준 정의**를 하여야 함

※ 가명처리 기법 등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참고1]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참고



### 가명처리 수준 정의표 작성 예시

순번	항목명	처리수준	비고
1	소유자명	- 가명처리 (암호화 : SHA2+Salt)	- 소유자명과 연락처는 추후 시계열 분석을 위해 가명처리 수행
2	연락처		
3	지번	- 가명처리 (삭제)	- 세부 지번의 정보는 분석목적에 필요하지 않음
4	전세	- 기타기술 (라운딩 : 만원 단위)	- 만원 단위의 금액만 분석 목적에 필요
5	보증금		
6	월세		
7	주택구분	- 처리하지 않음 ※ 항목이 다수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목록만 제시	- 처리하지 않는 항목을 작성
8	시도		
9	시군구		
10	읍면동		
11	전용면적		
12	공급면적		

## 2-4 가명처리 수행

- '가명처리 수준 정의표'를 기반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가명처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하여야 함
  - 추가정보 분리보관은 '가명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참조 가능함

※ 추가정보는 원칙적으로 분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할 수 있음



## 가명처리 절차(예시)

## 원본정보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구분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건물명	전세(천원)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전용면적	공급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26360107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대우마리나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89-3579	오피스텔	3611011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푸르지오시티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976-5432	아파트	43114101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평화	125,000	-	-	100.00	84.00

추출

추출

추출

## (대상선정)

- 목적 :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및 인근지역 시세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천원)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전용면적	공급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89-3579	오피스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976-5432	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125,000	-	-	100.00	84.00

## (위험도 측정)

- 처리환경 검토와 개인정보 항목별 위험도 분류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정의

**처리환경**  
A사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B기관에 제공(계약)  
제공되는 항목의 '지번'의 경우 등기부열람을 통해 특정개인식별 가능성 존재

+

분류

소유자명, 연락처는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가명처리(암호화)

구체적인 지번은 분석목적에 관계 없어 삭제 조치 및 시세정보는 분석에 필요한 단위(만원)로 가명처리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89-3579	오피스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976-5432	아파트	부산 광역시	해운 대구	우동	111-13	125,000	-	-	100.00	84.00

(소유자명, 연락처)  
+ Salt 암호화

삭제

라운드

가명처리

D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wd4e8502C1qe89rwqe	아파트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25,000	800	104.00	84.00
r5wle2Sxizi4wd64qwz	오피스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81,300	-	-	56.45	24.32
ghe6W1525ax40e24jx	아파트	부산 광역시	해운 대구	우동	125,000	-	-	100.00	84.00

## 03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가명처리 결과 ‘가명처리 수준 정의표’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제공처리 절차도



- 가명처리를 수행한 자와 가명정보취급자\*(분석 등), 가명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는 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추가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가 가명정보를 취급(분석 등)하는 경우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우려가 있음

\*\* 목적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취급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적정성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 필요

## 3-1 적정성 검토

-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 됐는지, 재식별 가능성 없는지 등을 검토
-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가능

※ ‘사전준비 단계’에서 구성한 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가 적정성 평가단 역할수행도 가능



##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시 참고사항

기능	- 기술영역에서 가명처리의 적정성, 데이터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명정보의 최종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검토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 되었는지 검토 -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중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데이터 특성에 따른 특이정보의 처리 내용 확인 - 가명처리 위험도, 가명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검토

## 3-1-1 적정성 평가사항

가명처리의 적정성	<p>가명정보처리자가 정의한 가명처리 수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p> <p>※ 가명처리 대상 항목별로 처리결과 전체를 검토(대용량 정보의 경우 중간에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등을 포함함)</p> <p>※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포함 여부 및 가명처리 수준 적정성 등을 검토</p>
목적달성 가능성	<p>가명정보가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된 가명정보로 활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b>가명처리 수준이 부족</b>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단계를 반복하거나 부분적으로 <b>추가 가명처리</b>를 수행</li> <li>● 데이터의 분포, 내용 등을 고려하여 <b>특이정보(식별가능성)</b>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b>적절한 조치</b>를 취하여야 함</li> </ul> <p>※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라도 ‘특이정보’를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차 가명처리 필요</p>



### 특이정보 예시 [출처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3p)]

#### 사례1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국회의원) 정보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 등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예시) 특정지역을 인접지역에 병합\* 하거나, 직업을 일반화(정치인)하여 가명처리 수행

\* 국가통계기관의 경우 세부 지역단위 통계 시 2천명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접 지역에 병합

#### 사례2

호텔, 렌터카 회사에서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객실 이용정보 및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이용내역을 가명처리 하여 여행사에 제공하고, 여행사는 신규 여행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호텔, 렌터카 등 여행업종에서 제공하는 객실이용정보, 차량이용정보는 특정 개인(공인 등)이 SNS 등 온라인에 공개하는 정보와 결합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음

※ (예시) 특정 차량(슈퍼카)의 이름을 일반화(스포츠카)하여 게시하거나, 호텔 최고급 객실정보를 일반객실 정보로 가명처리 수행

## 3-2 추가처리

- 추가 가명처리 필요시 **가명처리 단계 재수행**



### 가명정보 추가처리 사항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가명처리 3단계\*에서 수립한 ‘**가명처리 수준 정의표\*\***’(안내서 19p 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9p)에 따라 가명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
  - \* 가명처리 단계는 세부적으로 ①대상선정, ②위험도 측정, ③**가명처리 수준정의**, ④가명처리를 하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처리(제공)환경과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한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명처리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 활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하여 가명처리수준을 정의하여야 함**

## 3-3 제공방식 결정

제공방식	제공되는 가명정보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온라인 제공, 오프라인 제공, 안심 구역설정 등 제공방식을 결정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제공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b>암호화* 후 전송</b> 해야 하며 전송 시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 기능도 필요 * SSL(Secure Socket Layer)방식, 암호화응용프로그램(솔루션) 방식, IPSec VPN 또는 SSL VPN 방식, 첨부문서 암호화 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방식 등
오프라인 제공	오프라인 제공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b>암호화*하여 복사</b> 해야 하며 데이터 복사 시 오류의 방지를 위해 2개 이상의 복사본을 함께 저장하여 제공 (필요 시 2개의 HDD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USB 등 보조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전달 또는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 후 보조 저장매체에서 저장하여 전달
안심구역 설정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안심구역 설정 시 <b>허가된 경우만 출입 또는 이용기능</b> 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구역은 오프라인 공간 또는 온라인상의 독립된 안전한 공간 모두를 의미</li> <li>●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장치(예시)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카드 기반 출입통제 장치,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업무공간) 등</li> </ul>

## 04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출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36~40p)]

- 가명처리된 정보의 활용과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관리 단계로 정보처리자는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다만 가명정보 처리 중 우연히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등 목적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증가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처리중지, 회수, 파기 등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접근권한의 분리, 기록작성/보관 및 공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V.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참조할 수 있음

**4-1 가명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 내부 관리계획에는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가명정보 처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예시**

- 가.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 다.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가명정보처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 사.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참조

- 가명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시행하고, 관리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해야 함

## ② 수탁자 관리·감독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가명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가명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재식별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시

구분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식별 금지	· 가명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재제공 또는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	·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었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명 정보 처리 중지 및 위탁자에게 통지 의무 명시



###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특수조건 반영 사례 예시

#### 제00조(재식별 금지)

- ① ○은 △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은 △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가명정보 제공 받은자는 “○”, 제공기관은 “△”로 표시

## 4-2 가명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명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2호)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 DB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 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추가정보의 활용 목적달성 및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음

### ② 접근권한의 분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3호)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가능한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 하여야 함
-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권한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권한의 보유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권한을 관리·통제하여야 함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가명정보취급자가 가명처리 하는 시스템(이하 ‘가명정보처리시스템’) 외의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가명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명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권한 있는 가명정보취급자만이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가명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③ 가명정보 기록 작성·보관 및 공개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 예시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3 가명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가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등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가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조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양식1]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내용			
	가명정보 활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가명정보 세부활용 목적	※작성 예시 · (적절하지 않은 예시) 신제품 개발 관련 통계 작성 →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한 예시) A사의 OO정보를 활용하여 연령별 OO제품의 수요 예측을 위한 통계작성		
	가명정보 제공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input type="checkbox"/>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 및 보유기간	· 활용기간 :      년      월 · 보유기간 :      년      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 활용목적 증빙 서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활용자의 안전조치계획 증빙서류, 활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개인정보 목록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중

----- 자 르 는 선 -----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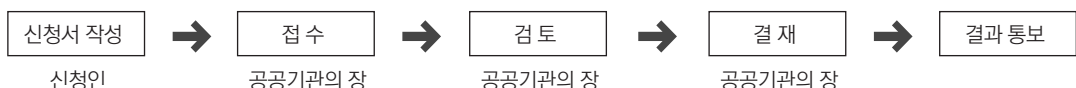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직인

처리 절차



[양식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활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활용하기로 한다.

- 제1조 신청인은 공공기관이 허용한 목적에 한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조 신청인은 제공받은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신청인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 활용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제4조 신청인은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신청인은 제공받은 가명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일체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기관 귀중

[양식3]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결정 통지 양식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가명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귀하의 가명정보 제공신청에 대한 제공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명정보 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공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전자우편주소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내용		
	가명정보 활용 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가명정보 세부활용 목적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일시		제공장소
	제공방법	[ ] 온라인 [ ] 오프라인 [ ] 안심구역	
제공 비용	[ ] 무료		[ ] 유료 ( 원) (부과기준: , 부과단위: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양식4]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거부 결정 통보 양식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가명정보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귀하의 가명정보 제공신청에 대한 제공거부 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명정보 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전자우편주소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가명처리 대상 공공데이터 내용			
	가명정보 활용 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가명정보 세부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

2021년 1월 인쇄  
2021년 1월 발행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E-mail : odpc@nia.or.kr)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data.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